

국민과 함께하는 **정의의 파수꾼**

2021. 1. 28. 보도자료

공보관실 02)708-3411 / 팩스 02)766-7757



제 목 : 1월 선고 즉시보도사건 외 보도자료

우리 재판소에서 2021. 1. 28.(목) 선고한 심판사건 결정요지 등 (즉시보도 외 사건 보도자료)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일시 : 2021. 1. 28.(목) 14:00 ~
- 장소 : 헌법재판소 대심판정

붙임 즉시보도 외 사건 보도자료 2건. 끝.

보 도 자 료

치료감호 청구 제한 사건

[2019헌가2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위헌제청;
2019헌바404(병합)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
위헌소원]

[선 고]

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28일 재판관 7:2의 의견으로,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고, 법원은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[2008. 6. 13.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] 제4조 제1항 및 제4조 제7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. [합헌]

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는 재판관 이선애,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이 있다.



2021. 1. 28.

헌법재판소 공보관실

□ 사건개요

- 제청법원(2019헌가24)은 형사사건(1심) 계속 중에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하였으나 검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, 2019. 9. 17. 직권으로 ‘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’(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‘법’이라고만 한다) 제4조 제7항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.
- 청구인(2019헌바404)은 형사사건(상고심) 계속 중에 법 제4조 제1항과 제7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, 2019. 10. 25.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.

□ 심판대상

- 이 사건 심판대상은 ‘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’(2008. 6. 13.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) 제4조 제1항과 제4조 제7항(이하 합하여 ‘이 사건 법률조항들’이라 한다)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.

[심판대상조항]
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(2008. 6. 13.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)

제4조(검사의 치료감호청구) ①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.

⑦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.

□ 결정주문

-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(2008. 6. 13.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) 제4조 제1항 및 제4조 제7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.

□ 이유의 요지

● 재판의 전제성 - 적극

-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되도록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여야 한다. 치료감호에 대한 재판과 피고사건에 대한 재판은 별개의 재판

이지만, 양자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, 피고사건을 선고할 때 치료감호사건에 대하여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.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당해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.

● 과잉금지원칙 내지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 - 소극

-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나, 법원으로부터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.
-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준수법기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, 이러한 검사로 하여금 치료감호청구를 하게 하는 것은 재판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. 그리고 치료감호는 본질적으로 자유박탈적이고 침익적 처분이므로, 법에서는 치료감호 청구주체와 판단주체를 분리함으로써 치료감호개시절차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. 따라서 검사만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여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.

● 국민의 보전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여부 - 소극

- 이미 다른 제도들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다.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치료감호대상자의 치료감호 청구권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한 치료감호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의 보전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.

□ 반대의견(재판관 이선애, 재판관 이은애)

-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권한과 법원의 치료감호청구 요구권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, 위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하여 곧바로 피고사건인 당해사건 재판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.
-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고 그 결정 취지에 따라 위 조항들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. 대인적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에 속하는 치료감호는 형벌과 그 요건이나

효과가 다르므로,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은 재판의 대상, 요건 및 절차가 구별되고, 서로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며, 단지 기초되는 범죄 사실이 동일할 뿐 서로 별개의 재판이다.

- 그렇다면 치료감호사건에 적용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피고사건인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고,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.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.

보 도 자 료

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처리 및 귀속에 관한 미군정청 법령 조항 사건

[2018헌바88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 제4조 등
위헌소원]

————— [선 고] —————

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, ① 1945년 8월 9일 이후에 성립된 거래를 전부 무효로 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(1945. 9. 25. 공포) 제4조 본문과 ②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 국민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을 1945년 9월 25일자로 전부 미군정청이 취득하도록 정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3호(1945. 12. 6. 공포) 제2조 전단 중 ‘일본 국민’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.

[합헌]



2021. 1. 28.
헌법재판소 공보관실

□ 사건개요

- 청구인들은 2016. 11. 24.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의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들이다. 청구인들은 2017. 4. 3. 위 토지를 울산광역시 중구가 도로 포장 등의 방법으로 점유·사용하고 있으므로 그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울산광역시 중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.
- 울산광역시 중구는, 위 토지가 전 소유자인 김○○의 부친 김□□이 1945. 8. 10. 재조선 일본인인 금△△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고 1945. 9. 7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,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(이하 ‘미군정청’이라 한다) 법령 제2호 제1조 및 제4조, 미군정청 법령 제33호 제2조 등에 따라 귀속 재산으로서 국유의 재산이고, 청구인들은 소유권 없는 자들로부터 이를 승계하였으므로, 청구인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다.
- 청구인들은 위 소송 계속 중 미군정청 법령 제2호 제4조, 미군정청 법령 제33호 제2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자, 2018. 1. 23.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.

□ 심판대상

- 이 사건 심판대상은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(1945. 9. 25. 공포) 제4조 본문과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3호(1945. 12. 6. 공포) 제2조 전단 중 ‘일본 국민’에 관한 부분(이하 ‘심판대상조항’이라 한다)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.

[심판대상조항]

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(1945. 9. 25. 공포)

제4조 본 법령에 설명한 종류의 거래로서 1945년 8월 9일 이후에 성립된 것은 본 일로 전부 무효로 함.

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3호(1945. 12. 6. 공포)

제2조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정부, 그 기관 또는 그 국민, 회사, 단체, 조

합, 그 정부의 기타 기관 혹은 그 정부가 조직 또는 관리한 단체가 직접 간접으로 혹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금, 은, 백금, 통화, 증권, 은행계정, 채권, 유가증권 또는 본 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기타 전 종류의 재산 및 그 수입에 대한 소유권은 1945년 9월 25일부로 조선군정청이 취득하고 조선군정청이 그 재산 전부를 소유함.

[관련조항]

구 귀속재산처리법(1949. 12. 19. 법률 제74호로 제정되고, 1956. 12. 31. 법률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2조 본법에서 귀속재산이라 함은 단기 4281년(1948년) 9월 11일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지칭한다. (이하 생략)

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(1963. 5. 29. 법률 제1346호)

제5조(국유화조치) ① 1964년 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. 1964년 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귀속재산으로서 1965년 1월 1일 이후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귀속재산도 또한 같다.

결정주문

-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(1945. 9. 25. 공포) 제4조 본문과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3호(1945. 12. 6. 공포) 제2조 전단 중 ‘일본 국민’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.

이유의 요지

- 심판대상조항은 1945. 9. 25., 1945. 12. 6. 각 공포되었음에도 1945. 8. 9.을 기준으로 하여 일본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거래를 전부 무효로 하고, 그 재산을 전부 1945. 9. 25.로 소급하여 미군정청의 소유가 되도록 정하고 있어서,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.
- 1945. 8. 9.은 미국 육군항공대가 나가사키에 제2차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써

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시점이면서 동시에 일본의 최고전쟁지도회의
 구성원회의에서 연합국 정상들이 일본에 대하여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 포츠담
 선언의 수락이 기정사실화된 시점으로서, 그 이후 남한 내에 미군정이 수립되
 고 일본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동결 및 귀속조치가 이루어지기까지 법적 상태
 는 매우 혼란스럽고 불확실하였다. 따라서 1945. 8. 9. 이후 조선에 남아 있던
 일본인들이, 일본의 패망과 미군정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반도 내에서
 소유하거나 관리하던 재산을 자유롭게 거래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고 신뢰하였
 다 하더라도 그러한 신뢰가 헌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보
 기 어렵다.

- 일본인들이 불법적인 한일병합조약을 통하여 조선 내에서 축적한 재산을
 1945. 8. 9. 상태 그대로 일괄 동결시키고 그 산일과 훼손을 방지하여 향후
 수립될 대한민국에 이양한다는 공익은, 한반도 내의 사유재산을 자유롭게 처
 분하고 일본 본토로 철수하고자 하였던 일본인이나, 일본의 패망 직후 일본인
 으로부터 재산을 매수한 한국인들에 대한 신뢰보호의 요청보다 훨씬 더 중대
 하다.
-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헌법 제13조 제2
 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.

□ 결정의 의의

- 이 결정은 1945. 8. 9. 이후 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처리 및 귀속과 관련하여,
 1945. 8. 9. 이후 성립된 거래를 전부 무효로 하고, 1945. 8. 9. 이후 일본인
 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을 1945. 9. 25.자로 전부 미군정청이 취득하도록
 정한 미군정청 법령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
 사건이다.
-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각 1945. 9. 25.과 같은 해 12. 6.에 공포되어
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함에도 당시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서 보호
 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
 의 사유가 인정되므로, 심판대상조항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헌
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,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
 합헌 결정을 하였다.